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510호
2. 발 의 자 : 이민석 의원
3. 발의일자 : 2025년 3월 28일
4. 회부일자 : 2025년 4월 2일

II. 제안이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이버 폭력의 범위에 ‘딥페이크 영상 제작·반포’가 추가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 교육감이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내용을 신속히 반영하여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사이버 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 관련 내용을 추가함(안 제2조)

2. 지원 범위에 성착취물 삭제 지원 요청을 추가함(안 제6조제3항)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참조
3. 입법예고 : 2025. 4. 5. ~ 4. 9. (의견 :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5년 3월 28일 이민석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510호로 발의되어 2025년 4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사이버 폭력의 범위에 ‘딥페이크 영상 제작·반포’가 추가되고 교육감이 직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이미지 합성물의 유포가 급증하면서, 딥페이크(deepfake) 영상 제작·반포가 사이버폭력의 새로운 유형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한 번 온라인에 유포되면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빠른 시간 내에 복제·확산되며, 완전한 회수 또는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존의 사이버 따돌림이나 단순한 모욕·비방과는 달리, 피해

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낙인을 남기며 장기적인 피해를 남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포될 경우 학업 지속이나 사회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사전적이고 즉각적인 대응 및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표-1] 3년간 서울시 관내 학교급별 딥페이크 신고 현황¹⁾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초	5	0	1(1명)
중	3	14	32(53명)
고	2	8	50(93명)
합계	10	22	83(147명)

※ 피해학생 수 집계는 2024년부터 실시하여 2023년 이전의 피해현황은 건수만 기재함.

○ 그러나 영상물 등 삭제지원은 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²⁾ 등에서 수행되고 있어, 실제 사이버 성폭력 사건을 가장 먼저 인지하게 되는 현장 기관인 학교 또는 교육청과 신속한 연계가 되지 않으면 즉각적인 대응은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이에 국회는 2025년 1월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2025. 8. 1. 시행)하여 사이버폭력의 범위에 ‘딥페이크 영상 제작·반포’를 명시적으로 포함³⁾하는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법률적 대응 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1) ‘시의원(박상혁의원) 요구자료 제출(737번)’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5434, 2025. 4. 8.)

2)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소속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등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운영) 개정으로 법적 근거 신설.[시행일: 2025. 4. 17.]

3)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2025. 1. 31.>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시행일: 2025. 8. 1.]

○ 또한, 국회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피해학생 등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을 추가 개정(2025. 9. 19. 시행)하였습니다⁴⁾.

- 이는 관련 법률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3항⁵⁾에서 규정한 것을 학교폭력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권한을 명시한 것으로, 즉각적인 영상물 삭제 대응을 통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두 건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체계에 따른 입법의 정합성을 도모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매우 타당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 다만, 동 조례와 규율 범위가 겹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우선,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방지법」을 근거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4)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4(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지원요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3. 18.>

5)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 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한다.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12., 2024. 10. 16.>

※ 기존에는 국가만 삭제지원 가능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삭제지원 근거 신설 [2025. 4. 17. 시행]

같은 디지털 성착취물 확산 사례를 계기로 2021년 제정되었으며,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구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동 조례는 「학교폭력예방법」을 기반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2023년 제정된 것으로, 사이버폭력 예방과 인식개선 등 교육이 주요 내용입니다.

- 이처럼 두 조례는 당초 입법 취지와 적용 대상에서 차이를 보였으나, 최근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딥페이크 등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대응과 피해구제 부분이 강화되면서 조례 적용 범위 간 중첩되는 부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유사한 개념이 별도로 규율되면서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입법경제적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일 수 있는바,

향후에는 두 조례의 통합 또는 기능 조정을 통해 입법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는 방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정의에 관한 검토(안 제2조)

- 안 제2조제2호는 “사이버 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2025년 8월 시행 예정인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 영상 제작·반포 행위를 포함하여 규정한 것과 법적 정합성을 이루는 개정으로서, 상위법과의 조화를 이루는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특히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정의를 괄호 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

로써, 현장 교사나 학교 관계자들이 조례 적용 시 혼란 없이 판단할 수 있도록 실무적 명확성을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동 개정조례안이 기존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피해”라는 포괄적 표현을 삭제 후 변경 조문으로 대체하고 있는바 조례상 사이버폭력의 해석 범위가 오히려 축소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4년 3월 시행된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를 대체하여 “사이버폭력”으로 정의를 재규정하였으므로, 개정조례안 중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한 피해를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개정사항 외의 부분 중 “사이버 따돌림”은 현재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의미가 불명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기존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되었던 “사이버 따돌림”이라는 용어가 2024년 3월 법 개정시 “사이버폭력”이라는 포괄 개념에 통합되어 삭제되었으나, 조례가 시의적절하게 개정되지 않아 법령과의 불일치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 이에 대해 법제처는 상위법령에 정의된 용어는 자치법규에 별도로 반복 규정하지 않고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원칙⁶⁾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치법규에 실익 없는 정의를 두는 것이 입법경제상 타당하지 않으며, 향후 상위법령이 개정될 경우 자치법규와의 불일치로 해석상

6)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경우, 상위법령의 용어정의는 자치법규에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므로 법률에서 용어정의가 된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 자치법규에서 다시 용어정의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치법규에 실익이 없는 규정을 두게 되어 입법경제상 타당하지 않고, 향후 법령이 개정 되었음에도 자치법규가 그에 맞추어 개정되지 못한 경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법제처 2015. 6. 16. 회신 15-0136 의견제시 사례)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동 조문은 정의를 직접 규정하기보다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를 준용함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입법의 정합성과 명확성을 높이는 방향이라 판단됩니다.

[표-2] 정의 규정에 대한 개정조례안과의 비교

현행 조례	조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이버 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행위로 사이버 따돌림, <u>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u>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이버 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행위로 사이버 따돌림, <u>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u> 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3] 학교폭력예방법상 정의 규정 변화

학교폭력예방법		
2021.3.23. 시행	2024.3.1. 시행	2025.8.1.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u>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u>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u>사이버폭력</u>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u>사이버폭력</u>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법		
2021.3.23. 시행	2024.3.1. 시행	2025.8.1. 시행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 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과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사업 및 지원에 관한 검토(안 제6조제3항)

- 안 제6조제3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하여, 교육감이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앞서 개정 취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동 조문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2025. 9. 19.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삭제 대상 범위와 권한이 상위법의 규정과 일치하므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삭제 지원을 신속히 연계하여 사

이러한 폭력의 확산을 막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이며,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직접 삭제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해 피해학생의 심리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참고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3항에서는 범죄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범죄증거를 보존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부칙에 관한 검토

- 동 개정조례안 부칙은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안 제6조제3항의 개정 근거가 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4제3항은 2025년 9월 19일에 시행되며, 이 조항에서 교육감이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직권으로’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처음 명시됩니다.
-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4제2항은 삭제지원의 요청 주체를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법률 시행 전 조례만으로 교육감의 삭제지원 요청 권한을 규정할 경우 상위 법률과의 충돌로 위법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입법체계의 정합성과 법적 안정성, 그리고 법률 우위의 원칙을 고려할 때, 동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4제3항의 시행일과 동일한 2025년 9월 19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 의견을 제

출하지 않았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4469, 2025. 4. 9.).⁷⁾

-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있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박소현(2180-8265)
----------	----------------	-------	----------------

7)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행정관리담당관-4469, 2025. 4. 9.)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90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2025. 1. 31.>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제16조의4(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① 국가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가 되어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에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31.>

②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에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지원요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8.>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3. 18.>
- ④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5. 3. 18.>
- ⑤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8.>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의 내용·방법, 제5항에 따른 상환청구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3. 18.>

[본조신설 2023. 10. 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시행 2024. 3. 1.] [대통령령 제34233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18조의3(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지원 내용 및 방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촬영물등 삭제가 필요한 피해 등에 관한 상담
2. 촬영물등 유포로 인한 피해 정보의 수집
3. 촬영물등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
4. 그 밖에 촬영물등 삭제지원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삭제지원요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피해학생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삭제지원요청자가 피해학생의 보호자이거나 그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및 피해학생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삭제지원요청자가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지원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청구금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4. 2. 2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성폭력방지법)

[시행 2025. 4. 17.] [법률 제20461호, 2024. 10. 16., 일부개정]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4에서 같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2021. 1. 12., 2024. 10. 16.>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9., 2021. 1. 12., 2024. 10. 16.>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한다.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12., 2024. 10. 16.>

1.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신상정보

④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0. 1. 29., 2021. 1. 12., 2024. 10. 16.>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상권 행사 금액의 산정 방식은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1. 29., 2021. 1. 12., 2024. 10. 16.>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 10. 16.>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업무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16.>

⑧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의 내용·방법, 제3항 후단에 따른 자료 보관의 방법·기간 및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 29., 2021. 1. 12., 2024. 10. 16.>

[본조신설 2018. 3. 13.]

[제목개정 2020. 1. 29.]